



선	기관의 장
람	

제 628 호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61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64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65호(공사입찰공고(소액수의(주원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66호(공사입찰공고(소액수의(간석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67호(공사입찰공고(소액수의(석정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0호(공사(소액수의)입찰공고(수현부락길가로등교체공사))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1호(공사입찰공고(차량등록민원실외1개소담장허물고나무심기공사)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2호(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3호((긴급)물품구매입찰공고(수목생육환경개선비용구입)) ·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5호(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남촌동42-17,19호)선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 · 공고) ·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7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간석동33-1호)선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 · 공고) ·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8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간석동33-15호)선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 · 공고) ·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79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5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80호(보상계획열람공고(남촌동262-2번지일원소방도로확장공사)) 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81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282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5-12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109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5-13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시행자변경지정고시) 1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5-14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1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5-15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개노선)실시계획(변경)인가(비관리청)고시) 113

남동구보건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05-11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법예고(안)) 117

동부공원사업소공고

-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공고제2005-9호(토지수용에따른보상금지급공시송달공고) 128

회								
람								

공	고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5-26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개정취지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시의지침(2005.3.16)에 따라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①항 관련
[별표1]의 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장설치 : 70%, 80만원을 → 90%, 120만원으로함.
- 담장철거 후 평행주차장설치 : 60%, 100만원을 → 90%, 180만원으로함.
-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 55%, 120만원을 → 90%, 230만원으로함.
- 경계담철거후 주차장설치(2면) : 50%, 150만원을 → 90%, 320만원으로함.
- 기계식주차장 설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삭제함.
- 추가 1면 설치시 추가지원금액: 40만원을 → 60만원으로함.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05.0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453-2853, fax453-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그사유)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구 분		지 원 금 액(원)
담장철거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60%범위 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26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4. 25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 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4. 11 ~ 2005. 4. 25(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달지
자동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다1906	박선자	남동구 간석4동235-26 삼우빌라 B/102호	-인천지방법원(2000 카단24266이승재)	이승재	남동간석동 37-191청암빌라 10차104-101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5. 4.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65호

공 사 입 찰 공 고(소액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주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도블럭포장 : 106㎡

○ 아스콘포장 : 13.1a

○ 보행자 보호펜스 : 9경관

○ 미끄럼방지포장 : 47㎡

마. 설계금액 : ₩78,711,000원 (추정가격 36,390,000원, 부가세 3,639,000원
관급자재 38,682,000원)

※ 기초금액은 40,029,000원 입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
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04.13(수) 09:00~2005.04.18(월) 13: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04.13(수) ~2005.04.18(월) [교통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04. 18(월) 14: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40,029,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66호

공 사 입찰 공 고(소액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간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간석초등학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도블럭포장 : 266㎡

○ 아스콘포장 : 7.4a

○ 보행자 보호웬스 : 68경관

○ 미끄럼방지포장 : 97㎡

○ 교통표지판 21EA, 및 보차도 분리대 56EA

※ 공사설계금액 : ₩111,215,000원 (추정가액 56,950,000원, 부가세 5,695,000원
관급자금 48,570,000원)

※ 기초금액은 62,645,000원 입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

조(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04.13(수) 09:00~2005.04.18(월) 15: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04.13(수) ~2005.04.18(월) [교통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04. 18(월) 16: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62,645,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제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67호

공 사 입 찰 공 고(소액수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석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석정초등학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도블럭포장 : 91m'

○ 아스콘포장 : 7.6a

○ 보행자 보호펜스 : 46경관

○ 교통표지판 24EA 등

마. 설계금액 : ₩89,591,000원 (추정가액 40,010,000원, 부가세 4,001,000원
관급자체 45,580,000원)

※ 기초금액은 44,011,000원 입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

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04.13(수) 09:00~2005.04.18(월) 17:00
-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04.13(수) ~2005.04.18(월) [교통과]
-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인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04. 18(월) 18:00
-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 가. 기초금액(44,011,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5 - 270호

공 사(소액수익)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현부락길 가로등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남동구 장수동 향토음식 마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개요

- 미관가로등 29본 교체, - 제어함 교체 2면, - 노후화 가로등 27본 철거

마. 설계금액 : 39,963,000원(추정가격 36,330,000원 부가세3,633,000원)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5년 4월14일(목) 09:00 ~ 2005년4월18일(월) 12:00

사.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년4월18일(월)13: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아.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년4월14일(목)~2005년4월18일(월) [건설과]

자.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
(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이용자 참가자격등록업체
로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39,963,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다.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 곳 :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경리팀 (☎ 453-2210)

2005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71호

공 사 입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차량등록민원실외 1개소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공사
-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차량등록민원실 및 남촌도림동사무소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라. 공사개요
 - 수목식재공 1식
 - 시설물공 1식
 - 부대공 1식
- 마. 설계금액 : ₩90,145,000원(추정가격81,950,000원, 부가세8,195,000원)
-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있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4. 18(월) 09:00~2005. 4.26(화) 14: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 4.18(월) ~2005. 4.26(화)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4. 26(화)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0호(2005. 2. 3)]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2005. 2. 3)]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2003년도말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192.01%, 유동비율 144.65%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90,145,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27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의 심의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안 제2조 1항)
- 위원 자격기준 일부 변경(안 제2조 2항)
-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사항의 심의기능 추가 및 변경(안 제3조)
-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5. 4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만수6동 1008번지 (☎ 032-453-2365, FAX 032-453-2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273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 명 : 수목생육환경개선 비료구입
- 수량 및 내역 : 지방서 및 비료 구입내역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입기초금액 : ₩49,83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5년 04월 15일(금) 09:00 ~ 04월 19(화) 13:00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년 04월 19일(화) 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 김 혜운(23032-453-2484)
※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입찰바람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 납품시 제조사 제품 공급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단일예가)이하 최저가 낙찰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5. 04. 22일한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 구에서 물품구매 품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가 되게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 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75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이 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4. 15.~2005. 4. 29.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5. 4. 29.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34다5725외 53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750~4)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만수동 981-4	김원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66번지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03-1133	인천47가7038	엑셀	남동공단 143-1 롯데 사본화장품 앞	이항규	서울 중랑구 면목동 542-30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348	인천82라5966	정보타이탄	남동공단 80-12롯데	박심신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번지 주공@ 705/1504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802	인천4가2548	시에로	남동공단 76B/12L 대안건설 정문옆	허은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62 유일빌라 4/B02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간서3동 90-14 우정엘스빌라 가, 나동 사이	정순옥	경기 시흥시 신천동 130-3 태웅빌라 가/301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구월1동 1142-9	현문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24-9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구월1동 1142-9	김시철	인천시 남구 송의동 46-26 제물포 그린빌라 302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6	인천70가3802	타우너	구월동 1127 한미빌딩 1층 주차장	조신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96-2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8	인천70다9118	그레이스	간서3동 918-16 태화@, 삼성빌라 앞	김효진	인천시 남동구 간서동 918-16 삼성빌라 6/B02호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만수1동 1005 주공@ 8단지 주차장	조창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5 주공@ 704/403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만수5동 912-1 신흥자동차정비공업사	정희재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누영@ 108/1301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814	인천30투1091	레간자	논현동 423-2 남동공단 1583L 인천폐차사업소	우상희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5-7 심환@ 111/203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815	경남43가2330	티코	논현동 423-2 남동공단 1583L 인천폐차사업소	김성수	경남 창원군 남지읍 남지리 533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816	서울2루4856	르망	논현동 423-2 남동공단 1583L 인천폐차사업소	이기호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42-2 두신빌라 202호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논현동 423-2 남동공단 1583L 인천페차사업소	신일금형산업㈜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678-1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6벤	북연동 292 세로남길 중진지점(용실마을)	배성철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8-7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남동공단 129B/10L 삼정(주) 부근	김덕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97-4 B 05호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간석3동 117-16 화이트하우스빌라 주차장	서귀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59-60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구월4동사무소 뒤 강한지주차장	박상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4-14 모래내그린빌라 2/401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25	인천3577432	아벨라	구월4동사무소 뒤 강한지주차장	조성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96-16 부선빌라 102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남촌동 625-31 인천화원 인도위	임영원	인천시 동구 송림동 37-99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만수동 918-5 한미은행 건너편	이상근	인천시 서구 석남동 533-23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1	경기183거7200	베스타벤	만수2동 5-426 신동아 정문입구	김학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85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2	인천7노1597	포터	고잔동 172-2 운정금속 앞 도로	나석구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381-3 유호@ 102/504호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만수1동 982-3 중합정비 뒤쪽도로	임영문	서울시 성동구 금호1가 1-160 B02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간석4동 586 칠성@ 뒤쪽	조용갑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169-35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38	인천31무7531	티코	만수4동 13 만수주공4단지 주차장	이춘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6-9 4층호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39	인천3러9072	르망	간석3동 918-5 간석테하@ 지하주차장 3층	최광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18-5 테하@ 102/1702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간석4동 178-281 중앙공원1지구	임상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62-2 북원빌라 1/202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간석4동 369-4 중앙공원1지구	우영덕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885-4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47	인천31다3802	엑센트	구월1동 1135 중앙도서관 건너편 도로	동양석재(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51-15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50	경기13보1010	그랜저	논현동 산71번지 옛 논현초교 뒤	㈜삼원기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9-7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54	전남3버4165	프라이드	논현동 111-282 동원레미콘 옆	민현기	전남 여수시 문수동 797 주공@ 104/1507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56	인천30보6235	아반떼	고잔동 182-8 서일자동차 앞	최재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43 다기구주택 103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57	인천80나8508	포터	구월1동 1230-13	양승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52 한양@ 39/103호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58	인천83나3782	마이티	구월1동 농산물 과일매장 주차장	김인기	인천시 중구 을목동 197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63	충북8다3534	포터슈퍼캐	구월1동 농산물 아채매장 주차장	이수연	충북 제천시 백문면 도곡리 461-4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64	인천31리8371	프라이드	간석동 616-61 신태영자동차공업사	박혜신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629-1 주공그린빌@ 103/1504	서울페차사업소 (442-6660)
866	인천80마7277	와이드봉고	남촌동 고속도로입구 인도워	김영구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33 연수주공1차@ 101/1410호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68	인천33너6977	스쿠프	논현동 563-2 논현동보@ 지하주차장	김기범	인천시 남구 문학동 401-2 206호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69	인천7로6680	타우너	논현동 442-41 구자원화시설풍지내	유영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8번지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870	인천7러4001	마이티	논현동 442-41 구자원화시설풍지내	권정자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2-25	인천페차사업소 (814-7077)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873	인천34터6679	포린스	송기천둔치공원주차장내	(주)현대 식품상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74-5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76	인천81기2859	와이드봉고	간석동 129-7 일방통행로	박수동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47-11 유주패밀리타운 104/203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78	경기4르4611	티코	장수동 9공수부근 은행나무	김기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25-8 신양빌리지 B/B01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83	서울46고4382	무쏘	간석4동 616-61 드림공업사앞	장진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89-2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84	인천82기5948	베스타6백	간석4동 616-61 태영자동차앞	박윤환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11-36 성은빌라 4/203	기전폐차사업소 (814-4400)
886	인천4너5229	시에로	간석4동 606-15 도로	김희복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34 연수2차 우성@ 210/2205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888	경기55너8884	엑센트	남동공단 122B/2L 케엘플라테크 공장식당 옆	(주)하나기계 산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38-2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891	인천80너4599	스타렉스 6백	만수6동 988-10 성우사 앞	이후식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538 태평@ 202/1701	인천폐차사업소 (814-7077)
894	인천7노5254	베스타 6백	구월1동 1180-16 송정빌라 1,2동 앞	정혜정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1-5 신용연립 1층 1층동 14호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897	인천31무1638	포텐샤	만수5동 888-3 녹수빌딩 주차장(인천김리교회앞)	이용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82-16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899	경기51라5338	엑센트	구월1동 291 연승빌라 5동 뒤쪽	인광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2-1 대림주택 3층 1호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900	인천30터3777	쏘나타	구월1동 291 연승빌라 5동 뒤쪽	이규혁	인천시 남구 주안동 75-13 지예아트홀@ 2/401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27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남촌동 소2-17, -19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남촌동 262-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도로명:소 2-17호선,소2-19호선)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건설과(☎032-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2-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2-17호선, 소2-19호선)
 - (2) 명 칭 : 남촌동 26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2-17호선 : 폭원(B)=8m, 연장(L)=223m중 172m
 - 소로 2-19호선 : 폭원(B)=8m, 연장(L)=213m중 9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5. ~ 200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남동동 262-2번지 일제 소방도로 확장공사 (A노선-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성명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대지	잔용지	도로	성명	주	소	
1	남동동	295-2	도	1,034	40	994			40	국(건설교통부)			
2		598	도	82,671	201	82,470	28		173	국(건설교통부)			
3		557-5	도	278	277	1	24		253	강한익	경성부정120-29		
4		556-10	진	10	10		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5		557-15	대	3	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6		559-11	도	45	45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7		559-1	도	30	29	1			29	국(건설교통부)			
8		560-1	도	33	30	3			30	공민사의외 6인	남동구 남동동 565		
9		560-5	도	1,031	109	922	18		91	인천광역시 남동구			
10		560-11	도	65	8	57	8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262-7	도	453	405	48	76		329	국			미등기
12		262-11	대	148	148		148			최상원	남동구 남동동 288	관교동 13-6 신원APT 102-302	기입류
13		261-18	대	62	62		62			이상덕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9-4 한강연립 302호		
14		261-28	대	65	65		65			공영미외 1인	서울 성동구 도선동 129		
15		261-24	대	55	55		55			류광성	서구 기좌동 335-7 한진퍼크빌 102호	남동구의외 2인	입류,근저당
16		261-2	도	192	51	141	24		27	국(건설교통부)			
17		261-21	대	12	12		12			노정규	경기 시흥시 철왕동 1180-2 102호	인천광역시의외 1인	입류
18		261-27	대	3	3		3			공석벽	남동구 남동동 261	남동구의외 1인	기입류,근저당
19		262-5	대	155	7	148			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		262-8	대	151	4	14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지조서(공유지 연명부)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A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대지	잔종지	도로	성명	주	소	성명	주	
6	남촌동	560-1	도	33	30	3			30	공민식	남동구 남촌동 565				6/29
										이기유	남동구 남촌동 565				6/29
										공용식	수원시 인계동 319-6 신발포APT 109-906				1/29
										관광식	남동구 남촌동 565				4/29
										공영숙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9				4/29
										공양숙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APT 11-710				4/29
										공남숙	남동구 남촌동 565				4/29
14		261-28	대	65	65		65			공영미	서울 성동구 도선동 129				1/2
										공희순	서구 신탄동 259-4 극동APT 104-2104				1/2
15		261-24	대	55	55		55			류광성	서구 기좌동 335-7 한진파크빌 102호	인천시 남동구			입류
												이광근	서구 기좌동 370-9 101호		근저당
												김병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87		근저당
17		261-21	대	12	12		12			노정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80-2 102호	인천광역시			입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입류
18		261-27	대	3	3		3			공석백	남동구 남촌동 261		황옥자	남동구 남촌동 261-1	가입류
													남인천농협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지 장 물 조 서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A노선)

입력 번호	소재지		구 조	용 도	층법	건 물 면 적 (㎡)			성 명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번				전체	면적	잔여		주 소	연락처	
1	남촌동	560-6	세면벽돌기와	주 택	1	56.40	24.24	32.16	미 상			
			목조스레트	통 로	1	38.62	7.73	30.89				
			세면벽돌스레트	주 택	1	9.75		9.75				
			목조스레트	창 고	1	19.80		19.80				
			세면벽돌스라브	범 소	1	3.50		3.50				
계						128.07	31.97	96.10				
			조립석콘크리트담장(H=1.5m)			10.4m	3.9m	6.5m				
2	남촌동	262-11	흙벽돌집(천막)	주 택	1	54.84	42.84	12.00	김 승 만	남동구 남촌동 262-3	469-3400	
계			목조라이프	주 택	1	10.09		10.09				
						64.93	42.84	22.09				
3	남촌동	261-18	블 리 · 스레트	범 소	1	3.74	3.74		이 철 배	남동구 남촌동 262-1	469-1953	
4	남촌동	261-28	블럭담장(H=1.0m)			8.3m	6.3m	2.0m	공 영 미	서울 성동구 도선동 129	464-3443	
5	남촌동	261-1	목조라이프	창 고	1	2.65	1.28	1.37	공 석 택	남동구 남촌동 261-1	465-9332	
			목조라이프	차 양	1	7.32	4.18	3.14				
			세면벽돌스레트	식 당	1	74.90	0.95	73.95				
			세면벽돌스라브	식 당	1	33.50		33.50				옛날잡쌀순대
			적벽돌기와	주 택	1	85.68		85.68				옛날잡쌀순대
			세면벽돌스레트	창 고	1	8.60		8.60				
			블럭스레트	상 가	2	35.40		35.40				수정건축
계						248.05	6.41	241.64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2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간석동 소3-1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명:소3-1호선)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건설과(☎032-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소3-1호선)

(2) 명 칭 :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1호선 : 폭원(B)=5m, 연장(L)=12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5. ~ 2006.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토 지 조 서

◆ 공시명 :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번 호	소 제 지		면 적		공시 지점		영지미결합 지점		성명	주 소		구 분	이해관계인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잔여 면적	잔여 면적	잔여 면적	잔여 면적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1	간 석	617-25	장	585	585			209.6	윤준표	인천동구송림동83					
									이경원	서울강남구반포동1257 반포아파트17동404호					
									이경철	인천남구주안417-9					
									이혜자	서울용산구이촌동300-10 진보아파트1106호					
									윤태식	서울서초구잠원동52-1 신반포24아파트343동602호					
									윤명식	서울성북구성북동168-25 진주빌라비동101호					
									윤두식	서울서초구잠원동65-32 신반포7차아파트301동205호					
									윤혜숙	서울용산구이촌동300-10 진보아파트1106호					
									박상덕	인천서구가좌동81-59 범양아파트105동1502호					
									진삼종	인천남동구간석동617-6					

토 지 조 서

▲ 공시명 : 간석동 소3·1호신 도로개설공사

번 호	소 제 지			면 적		공유 지분	설계이용상환		소 유 자			미 해 관 계 인			비 고
	등 명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입 잔 여		잔 중 지	도 로 대 지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1	간 석	617-25	창	585	585	115.525 / 585	375.4	209.6	미래 도시 이집일 주식 회사	대전유성구봉명동543-16 지우빌딩		대한토지 신탁주식 회사	서울강남구 대치3동 944-31	신탁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27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간석동 소3-15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명:소3-15호선)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건설과(☎032-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3-15호선)
 - (2) 명 칭 :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15호선 : 폭원(B)=6m, 연장(L)=2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9. ~ 200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계재 생략)

총괄표

【간석동간석역옆(소3-15호)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현황)	토지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동	지번		금부면적 (㎡)	편입면적 (㎡) 공공면적 기타면적	잔여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간석	597-3	전 (나대지)	335.0	0.0	0.0	장형기	인천연수구 청학동545-1 현대APT103-1002호			
2	간석	596-3	전 (나대지)	365.0	0.0	0.0	전호영	인천연수구옥련동626 럭키송도APT111동405 호			
3	간석	595-3	대 (나대지)	164.0	0.0	0.0	장형기	인천연수구 청학동545-1 현대APT103-1002호			
4	간석	760-5	도 (도로)	46.0	0.0	0.0	전호영	인천연수구옥련동626 럭키송도APT111동405 호			
5	간석	593-2	전 (나대지)	18.0	0.0	0.0	장창기	인천남구주안동1196 안국APT 5동-506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	근저당권
									김준원	부천시원미구상동570-1 하안마을2608동601호	근저당권
6	간석	594-3	전 (공장 부지)	364.0	0.0	0.0	장형기	인천연수구 청학동545-1 현대APT103-10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현황)	토지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동	지번		공부면적 (m ²)	평면면적 (m ²) 공공면적 기타면적	잔여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간석	589-4	전 (공장 부지)	151.0	151.0 0.0	0.0	김광본	인천남동구 간석동 605-7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서울중구물지로2가150	입류 입류 근저당설정
합 계				1,443	1,443						

지 장 물 조 서

[illegible]

남동구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 49 -

지 장 물 조 서

남서울구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기설공사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279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기업자) :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2,543,054.9㎡
사업기간 2000. 3. 31 ~ 2006. 12. 31
5. 열람기간 : 2005. 04. 15 ~ 2005. 04. 29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 내역 : “별 첨” (제시액조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453-2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 타

재결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재 결 신 청 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택촉법제8조,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0.4.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5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2,543,054.9m'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15-28, 산41-2 및 고잔동 120-9번지 일원
보상액 및 그 내역		68,514,800원(별지기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방법 사용의기간	- -
지장물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동명토파와외 13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8-1 남동공단 27블럭 1롯데 예성그린캐슬 1109호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2001.12.26
재결신청의 청 구	청 구 일	2001.12.26(협의종료일 : 2005.3.4)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동명토파와외 13인
	청구인의 주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8-1 남동공단 27블럭 1롯데 예성그린캐슬 1109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1부 2. 협의경위서 각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1부 5.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류 각1부(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동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재지역 조서

사업지구: 인천광역시
(구역: 원)페이지: 1 of 2
작성일: 2005.03.04

연번	소재지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기업자재지역	손실치액		관리구분	잔액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차분	동아	당일매매	단가	금액	손실치액		
10086 - 1	고잔동 120-91(120-4)	불채당상	13.00 m	650,000	650,000	50,000	650,000	(주)동원로퍼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0-9 405-84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 남동공단 27동 1호트 특별	관리구분	잔액
10086 - 2		불채당	1.00 m	200,000	200,000	0	200,000			
							650,000 원			
10076 - 1	고잔동 132-21(132-2)	연립주택	1.50 m	60,000	100,000	0	90,000	고잔동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2-2 408-130 인천 연수구 송촌동 822 4/1 동아대앞 110-601		
10076 - 2		연립주택 2 4+16 8	1.00 m	600,000	800,000	0	800,000			
							880,000 원			
10085 - 1	고잔동 120-7	연립주택(차량포함) 3+12m	1.00 m	700,000	800,000	0	750,000	고잔동 408-1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21/3 동원로퍼 107-883		
10085 - 2		불채당	2.00 m	500,000	500,000	0	500,000			
							1,250,000 원			
10083 - 1	고잔동 120-91(120-4)	불채당 2 연립주택(차량포함) 14 74 m	14.74 m	580,800	737,000	45,000	663,300	고잔동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0-8 404-250 인천 연수구 기동동 4-2 32/5 동원로퍼 105-1003		
10083 - 2		불채당	2.00 m	500,000	500,000	0	500,000			
10083 - 3		불채당	1.00 m	1	1	1	1			
10083 - 4		연립주택	22.00 m	330,000	330,000	15,000	336,000			
10083 - 5		연립	1.00 m	200,000	200,000	0	200,000			
							1,693,300 원			
10077 - 1	고잔동 129-171(129-8)	연립주택(차량포함) 2-8	18.00 m	840,000	840,000	40,000	840,000	연립주택 150-10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00 21/7 동원로퍼 101-130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00 20/3 동원로퍼 101-1105		
							840,000 원			
2153 - 1	연립주택 연41-2	연립주택	2.25 m	200,000	200,000	0	200,000	연립주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연41-2 주소불명		
							200,000 원			
10090 - 1	고잔동 120-7	연립주택(차량포함) 10m	1.00 m	750,000	800,000	0	750,000	고잔동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0-8 409-020 경기 부천시 반미구 동흥 1182 8/5 그린리온 1310-801		
							750,000 원			
10082 - 1	고잔동 89-5	연립주택 3+4(차량포함) 10m	1.00 m	700,000	800,000	0	750,000	고잔동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89-5 408-1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 2/3 연수주공1차아파트 101-713		
10082 - 2		연립주택	24.00 m	720,000	840,000	32,500	780,000			
10082 - 3		연립(차량포함)	1.00 m	250,000	300,000	0	275,000			
10082 - 4		연립(차량포함) 10m	1.00 m	200,000	200,000	0	200,000			
10082 - 5		연립주택	7.00 m	112,000	140,000	18,000	126,000			
10082 - 6		연립주택	13.00 m	208,000	260,000	18,800	234,000			
							2,365,000 원			
10080 - 1	고잔동 89-4	연립주택(차량포함) 10m	8.25 m	9,590,000	10,875,000	0	10,232,500	연립주택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89-4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0 17/1		
10080 - 2		연립주택	1.00 m	800,000	800,000	0	800,000			
							11,032,500 원			
10092 - 1	고잔동 141-9	연립(차량포함) 10m	1.00 m	1,000,000	1,000,000	0	1,000,000	연립 422-706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동원로퍼 107/304 422-080 경기 부천시 소사구 연립 151-2 25/8 연립아파트 105-1003		
							1,000,000 원			
10075 - 1	고잔동 132-81(132-1)	연립주택 3+4	1.00 m	300,000	400,000	0	375,000	연립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2-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8-25 17/3		
10075 - 2		연립주택 3+4	1.00 m	300,000	300,000	0	300,000			
10075 - 3		연립주택	1.00 m	300,000	300,000	0	300,000			
10075 - 4		연립주택	1.00 m	700,000	800,000	0	750,000			
10075 - 5		연립주택	18.00 m	780,000	780,000	40,000	750,000			
10075 - 6		연립주택	5.00 m	450,000	500,000	0	475,000			
10075 - 7		연립주택 5층연립	1.00 m	500,000	600,000	0	55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지역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구역:경)페이지: 2 of 2
작성일: 2005.03.04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용건명, 구조	수량	원가(기준별 원가액)		기업자제지역		소유자 이름	관리구분	관계인 이름
				비율	대당액	단가	금액			
10075 - 0	고잔동 133-4 (133-1)	역물, 골목길 500평	1.00 차					이성재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3-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0-25 17/3		
10075 - 0		벽면조각길	1.00 차	800,000	800,000	0	800,000			
[소계]							4,110,000 원			
10079 - 1	고잔동 241-2	당장(골목) 골목길	80.00 m	4,000,000	4,000,000	50,000	4,000,000	이종국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1-2 157-010 서울 강서구 골목길 1145 23/1 부경산업(주)인천대리점		
10079 - 2		당장 골목	21.00 m	525,000	630,000	27,500	577,500			
10079 - 3		본막골마루 등 1-1.1	1.00 차	400,000	400,000	0	400,000			
[소계]							4,977,500 원			
10081 - 1	고잔동 05-5	당장 본막골마루 (본막골마루 1)	38.00 차	10,000,000	11,712,000	0	11,330,000	골목길 405-310 인천 남동구 고잔동 05-5 402-200 인천 남동구 우현동 05-16 11/1		
10081 - 2		당장 조형석	30.00 m	900,000	1,000,000	32,500	975,000			
10081 - 3		당장기 50P	1.00 차	3,700,000	4,000,000	0	3,850,000			
10081 - 4		스포팅기 50P	1.00 차							
10081 - 5		당장기 50P	1.00 차							
10081 - 6		스포팅기 50P	2.00 차							
10081 - 7		당장기 50P	1.00 차							
10081 - 8		스포팅기 50P	1.00 차							
[소계]							16,161,000 원			
10081 - 1	논현동 415-08	역물골 골거를 형석스래	100.00 차	12,000,000	14,400,000	65,000	13,800,000	골목길 405-04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08 402-130 인천 남동구 우현동 025-7 23/4 02 우2지리점 100-1007		
10081 - 2		골목골고1 골거를 형석스래	22.00 차	1,540,000	1,650,000	72,500	1,595,000			
10081 - 3		골목골고2 골거를 형석스래	20.00 차	1,400,000	1,500,000	72,500	1,450,000			
10081 - 4		골목골고3 골거를 형석스래	8.00 차	580,000	600,000	72,500	580,000			
10081 - 5		골목골고4 골거를 형석스래	12.00 차	940,000	950,000	72,500	970,000			
10081 - 6		새한양 골거를 형석스래	10.50 차	840,000	945,000	65,000	882,500			
10081 - 7		사무실 제로형석스래	10.50 차	1,950,000	1,950,000	100,000	1,950,000			
10081 - 8		당장	1.00 차	900,000	1,000,000	0	950,000			
10081 - 9		당장	22.00 m	280,000	330,000	14,000	300,000			
10081 - 10		당장	5.50 m	500,000	500,000	0	500,000			
10081 - 11		당장	1.00 차	100,000	100,000	0	100,000			
[소계]							22,795,500 원			
[총계]							68,514,000 원	소유자수: 14 명	관리구분: 0 명	관계인수: 0 명

남동구공고 2005-28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5. 4.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L=223M, B=8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2-2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05. 5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남촌동 262-11외 13필지
 - 지 장 물 : 상기 지번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5. 4. 16 - 2005. 4. 30(15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건설과
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토 지 조 서

【남촌동 262-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촌동	557-5	도	278	277	강한익	경성부 정120-29				
2	남촌동	560-1	도	33	30	공민식	남동구 남촌동 565				6/29
						이기유	남동구 남촌동 565				6/29
						공봉식	수원시 인계동 319-6 신밤포 ③109-906				1/29
						공광식	남동구 남촌동 565				4/29
						공명숙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9				4/29
						공양숙	부평구 부평동705 동이③11-710				4/29
						공남숙	남동구 남촌동 565				4/29
3	남촌동	262-11	대	148	148	최상원	인천 남동구 남촌동 288		허경숙	남구 판교동 13-6 삼환③102-302	가압류
4	남촌동	261-18	대	62	62	이상덕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9-4 한강연립 302호				
5	남촌동	261-28	대	65	65	공영미	서울 성동구 도선동 129				1/2
						공희순	서구 신탄동 259-4 극동③ 104-2104				1/2
6	남촌동	261-24	대	55	55	류근성	서구 가좌동 335-7 한진파크 빌 102호		인천시남동구		입류
									이광근	서구 가좌동 370-9 101호	근저당
									강병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87	근저당

토 지 조 서

【남촌동 262-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7	남촌동	261-21	대	12	12	노정규	시흥시 정왕동 1180-2 102호	인천광역시		압류
8	남촌동	261-27	대	3	3	공석택	인천 남동구 남촌동 261	근로복지공단 황옥자	경인지역본부 남동구 남촌동 261-1	압류 가압류
9	남촌동	567	임	358	358	김민선	인천 연수구 532 경남② 101-907	남인천농협	연수구 옥련동334-1	근저당
10	남촌동	568-6	전	94	94	이강진	인천 남동구 남촌동 565			325.76/358 32.24/358
11	남촌동	566-15	대	11	11	공유식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정② 2-1301			
12	남촌동	566-16	대	50	50	김우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66-7	남인천농협	연수구 옥련동334-1	근저당
13	남촌동	566-17	대	85	85	최춘석	인천 남동구 남촌동 566			
14	남촌동	566-18	대	181	181	이정혜	인천 남동구 남촌동 566-3	가솔신8보종기름 (주)경기은행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남동구 구월동1127	가압류 가압류
								남동농협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지상권
								김학순	남구 주안동 1557-5	근저당
								윤무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376	근저당

물 건 조 서

【남촌동 262-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물건소재지		건물면적(㎡)			구 조	용 도	점 유 자		비고
	동명	지 번	전체	편입	잔여			주 소	성 명	
1	남촌동	560-6	56.40	24.24	32.16	세멘벽돌,기와	주택		미상	
			38.62	7.73	30.89	목조,스레트	통로			
			9.75		9.75	세면벽돌,스레트	주택			
			19.80		19.80	목조,스레트	창고			
			3.50		3.50	세멘벽돌,스라브	변소			
계			128.07	31.97	96.10					
			10.4	3.9	6.5	조립식콘크리트담장(H=1.5m)				
2	남촌동	262-11	54.84	42.84	12.00	흙벽돌,짚(천막)	주택	남동구 남촌동 262-3	김승만	
			10.09		10.09	목조,라이트	주택			
계			64.93	42.84	22.09					
3	남촌동	261-18	3.74	3.74		블록,스레트	변소	남동구 남촌동 262-1	이철배	
4	남촌동	261-28	8.3	6.3	2.0	블록담장(H=1.0m)		서울 성동구 도산동 129	공영미	

물 건 조 서

【남촌동 262-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물건소재지		건물면적(㎡)		구 조	용 도	전 유 자		비고
	동명	지 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5	남촌동	261-1	2.65	1.28	1.37	창고	남동구 남촌동 261-1	공석택	
			7.32	4.18	3.14	차양			
			74.90	0.95	73.95	식당			
			33.50		33.50	식당			
			85.68		85.68	주택			
			8.60		8.60	창고			
			35.40		35.40	상가			
계			248.05	6.41	241.64				
6	남촌동	566-16	25.98	0.41	25.57	창고	남동구 남촌동 566-8	김우조	
			19.30	19.30		농형망웁스(H=1.8m)			
7	남촌동	566-17	67.20	15.20	52.00	세면벽돌담장(H=1.1~1.0m)	남동구 남촌동 566-9	최춘석	
8	남촌동	566-18	60.36	38.75	21.61	철골,조립식판넬	남동구 남촌동 566-3	이정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8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유세제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기가 변경·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안 제25조, 안 제28조, 안 제50조)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 되도록 개정하고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장제3절 제35조 내지 제4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4.27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0, 224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4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유세제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기가 변경·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안 제25조, 안 제28조, 안 제50조)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 되도록 개정하고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장제3절 제35조 내지 제46조)

☐ 참고사항(관련법규)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 시행)
-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 시행)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과세대상 등)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인천광역시남동구내(이하 “구내” 라 한다)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3조(납세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과세표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한다.

제26조(세율)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제4목”을 “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6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제1항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29조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제1호 내지 제6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2장제3절(종합토지세) 제35조 내지 제46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u> 제3조(세목)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u>종합토지세</u> ③ (생 략)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인천광역시남동구내(이하 "구내"라 한다)에 소재하는 <u>건축물·선박 및 항공기</u>(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u>관내에 기항지</u>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u>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u> 제3조(세목)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과세대상 등) ----- ----- ----<u>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u>----- ----- ----<u>구내에 기항지(선적항)</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u> ⑥<u>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2. <u>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u> 3. <u>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 4. <u>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u> 5. <u>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u> 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 <u>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u>
<u>제24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u>	<u>제24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u>
<u>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u>	<u>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 제26조(세율) ① -----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그 가액의 1,000분의 6</u>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u>그 가액의 1,000분의 3</u> 2. 선박 (1) 고급선박 <u>그 가액의 1,000분의 50</u> (2) 제1목 이외의 선박 <u>그 가액의 1,000분의 3</u> 3. 항공기 <u>그 가액의 1,000분의 3</u>	(3) (1) 및 (2)외의 토지 <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u>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u>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u>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 나. 가목 이외의 주택 <u><과세표준> <세율></u> <u>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u> <u>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u> <u>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 -----제1항제1호제4목----- -----	②----- ----- -----제1항제2호다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 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 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제27 조제1 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2. <u>별도합산과세대상</u> : <u>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u> 3. <u>분리과세대상</u> : <u>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u> ②<u>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u> ③<u>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u>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u>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 할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 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 기 시작한 시기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 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 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 기 시작한 시기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 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 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 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 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 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 고 등) ①법 제186조-----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채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1. ----- <u>부동산</u> 2. ----- -- <u>부동산</u> 3. ----- <u>부동산</u> 4. ----- <u>부동산</u> ② ----- <u>부동산</u> ----- -----.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u>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신 설>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u>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u> 4. <u>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u> 5. 건축물 및 주택----- ----- 6. <u>토지, 건축물 및 주택</u> ----- ----- ----- 7. <u>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u>
제3절 종합토지세 <u><제35조 내지 제46조></u>	제3절 종합토지세 <삭제> <u><삭 제></u>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28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취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유세제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 안 제8조 내지 안 제24조)
-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의 감면규정범위를 확대 개정(안 제8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을 신설(안 제28조)
-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4.27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0, 224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05년 4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유세제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 안 제8조 내지 안 제24조)
-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의 감면규정 범위를 확대 개정(안 제8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을 신설(안 제28조)
-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 참고사항(관련법규)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 시행)
-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 시행)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3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한다.

제14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5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를 “재산세”로 한다.

제20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2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3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 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u>	<u>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u>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 ----- ----- ----- ----- <u>재산세</u> ----- -----.
제3조(한센정착농원을 위한 감면) 한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을 위한 감면) ----- ----- ----- ----- ----- ----- 재산세-----.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	----- -----<u>재산세</u>----- -----.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u>-----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u>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u>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u>----- ----- -----재산세를----- -----. 1. ----- ----- -----. 2. -----건축물 및 토지로 ----- -----. 3. ----- -----. ② 「문화재보호법」 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u> <u><신 설></u>	<u>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 <u>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 서는 1년 이상	----- ----- ----- -----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 -----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 ----- -----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개선과제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u>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u>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u>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재산세</u>-----. 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u> ----- -----<u>재산세</u>-----. 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u> -----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 ----- 재산세 ----- ----- -----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u> 에 대하여는 5년간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 재산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를 면제한다.	-----.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u> <u>과세표준액</u>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 <u>재산세</u> ----- --.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u> ----- ----- ----- -----.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 ----- ----- ----- ----- ----- 1. ----- ----- ----- 재산세 ----- ----- ----- ----- ----- ----- 2. ----- ----- ----- 재산세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의 50을 경감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 ----- <u>재산세</u> -----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 ----- ----- <u>재산세</u> ----- ----- ----- ----- -----.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u> 경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 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u> 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u>종합토지세</u>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 중 <u>재산세</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 ----- -----. <u>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u>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05 - 12 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5.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안남·동암연립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안남·동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석우종합건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플라자 504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외 1필지
 - 연 면 적 : 12,147.57㎡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3층 1개동, 91세대
 - 사 업 비 : 13,288,68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06. 8.
5. 주요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주체	안남·동암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목동종합건설	안남·동암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석우종합건설	
시공사	(주)목동종합건설	(주)석우종합건설	
사업비	11,500,000천원	13,288,680천원	사업비 증가
사업시행기간	2003. 6 ~ 2005. 6	2005. 5 ~ 2006. 8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 - 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자지정 고시합니다.

2005. 4.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주차장(노외주차장)

(2) 명 칭 : 길병원 주차빌딩

3. 사업의 규모(변경있음)

- 당 초 : 면적 = 9,293.53㎡

- 변 경 : 면적 = 9,073.62㎡(감 219.9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03. 10. ~ 2004. 9.

- 변 경 : 2003. 10. ~ 2005. 8.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1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632) 및 도시계획과(☎032-453-26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4.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2번지
2. 변 경 내 용 : 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 변경 및 사업기간연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주차장(노외주차장)
 - (2) 명 칭 : 길병원 주차빌딩
4. 사업의 규모(변경있음)
 - 당 초 : 면적 = 9,293.53㎡
 - 변 경 : 면적 = 9,073.62㎡(감 219.9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6.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03. 10. ~ 2004. 9.
 - 변 경 : 2003. 10. ~ 2005. 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없음
9. 첨 부 : 관계도서(게제 생략)

토지조서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5-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2개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비관리청)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고잔동 소1-1호선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건설과(☎032-453-25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5. 4.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5-7번지 일원(변경없음)
2. 변경내용 : 사업시행지의 편입토지 분할로 인한 조서정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로(소1-1호선, 소1-3호선)
 - (2) 명 칭 : 고잔동 소1-1호선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소로 1-1호선 : 폭원(B)=10m, 연장(L)=615m중 217m
 - 소로 1-3호선 : 폭원(B)=10m, 연장(L)=15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주)보루네오가구 대표이사 한순현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번지
6.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4. 10. ~ 2005.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별첨」
8.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용 지 조 서 (실제이용현황)

공사명 : 고잔동 소1-1호선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입원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면적	잔여 면적	실제이용현황(면적도로부분)			성 명	소 유 자		비 고
	동	지 번					도로(구거)	대지(기타)	계				
1	고잔	163-13	장	110	110	0	46	64	110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2	고잔	163-8	답	134	134	0	81	53	134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3	고잔	163-23	장	506	506	0	0	506	506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4	고잔	170-1	답	231	231	0	73	158	231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5	고잔	171-1	전	238	238	0	0	238	238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6	고잔	172-2	전	4362	1	4361	0	1	1	김 정 수	고잔동 212	-	
7	고잔	586	도	6,194	51	6,143	0	51	51	국(진교부)	-	-	
8	고잔	245-9	전	116	116	0	0	116	116	경화정공㈜	고잔동 245-1	근저당권 외	
9	고잔	245-7	전	368	368	0	0	368	368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10	고잔	241-4	장	836	563	273	0	563	563	인천광역시	-	-	
11	고잔	246-9	장	659	659	0	524	135	659	인천광역시	-	-	
12	고잔	247-4	장	279	279	0	136	143	279	인천광역시	-	-	
13	고잔	248-3	장	215	215	0	132	83	215	인천광역시	-	-	
14	고잔	145-1	장	349	349	0	0	349	349	㈜보루내오기구	고잔동 246-1	-	
계				14,597	3,820	10,777	992	2,828	3,820				

남동구보건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5-11호

입 법 예 고(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의 규정 (안 제3조 - 안 제6조)
-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5. 3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남동구보건소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453-2771, FAX : 032-453-277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년 4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절차의 규정(안제4조 -안 제6조)
-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본 문 “별첨”

☐ 참고사항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건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전화 453-2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기관명칭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 청 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번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원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부과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원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내역 및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붙임: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별 표 】

■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처분일, 재적발일)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동부공원사업소공고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제2005 - 9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 및 수용재결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반송되었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5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장

1. 수용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28-4
2. 소 유 자 : 서원종삼
3. 손실보상금액 : 금삼천일백육십팔만육천오백이십원정(₩31,686,520)
4. 공시송달기간 : 2005. 4. 18 ~ 2005. 5. 3
5. 참 고 사 항 : 위 토지의 수용개시일은 2005년 5월 10일이므로, 2005년 5월3일까지 보상금 청구가 없을시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